#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5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조지연・우재준・최수진

박준태 • 엄태영 • 김종양

박수민・강승규・고동진

김소희 • 백종헌 • 박덕흠

최은석 · 강대식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,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 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'23년 말 기준 30.9%에 불과하며,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 하고,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 하는 금액[이하 "변제금"(辨濟金)이라 한다]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
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(제1항제3호·제4호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 이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 "보험의 당연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료" 및 "보험료, 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 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"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
	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
	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
	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
	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
	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	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
	액[이하 "변제금"(辨濟金)이라
	한다]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
	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
	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
	<u> 징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</u>
	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
	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
	8조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
	2조(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2
	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
	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
	이 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
	"보험의 당연가입자"는 "사업
	주"로, "보험료" 및 "보험료,
	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

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 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 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 동부장관(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"으로 본다.